

通商産業部에다 올리면 通商産業部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擔保가 없이 貸出
이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 工場은 없지만 本社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貸出이 됩니다.

이상 報告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
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
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
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생산시설을 설비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
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
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
다.

5. “자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
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
과를 이용하는 것.

8.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
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사업전환”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

나.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
된 업종이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
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
사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

제3조(중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제1항 중 “중소기업체”를 각각 “중소기
업자”로 한다.

<p>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5 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운전자금계정과 시설자금계정으로 구분·설정하여 관리한다.</p> <p>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제2장의 제목 중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운전자금”으로 한다.</p> <p>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8 조(유자대상) ①운전자금의 유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및 창업투자회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망 중소기업자 2. 지역 특화산업 생산자 3. 공업단지 입주자 4.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참여자 5.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6. 기타 시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p>②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용자받은 운전자금을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p> <p>제9조 중 “업체는”을 “중소기업자는”으로 한다.</p> <p>제3장의 제목 중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시설자금”으로 한다.</p> <p>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2조(유자대상) ①시설자금의 유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내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창업투자회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화사업 추진 중소기업자 2. 정보화사업 추진 중소기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술개발사업화사업 추진 중소기업자 4.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 추진 중소기업자 5. 창업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자 6. 사업전환사업 추진 중소기업자 7.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8. 기타 시장이 성장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자 <p>②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용자받은 시설자금을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p> <p>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4조·제15조 중 “구조개선자금”을 “시설자금”으로 한다.</p> <p>제16조 중 “업체는”을 “자는”으로 하고, 제17조 중 “업체의”를 “자의”로 한다.</p> <p>제19조제1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p> <p>제20조제2호 중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운전자금”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p> <p>○委員長 李敏國 委員 여러분, 그리고 産業經濟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長時間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p> <p>이상으로 第75回 臨時會 第1次 生活環境委員會 會議를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議事棒 3打)</p> <p style="text-align: right;">(12時 35分 散會)</p> <hr/> <p>○出席委員</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李 敏 國</td> <td>權 赫 柱</td> <td>李 迎 春</td> </tr> <tr> <td>鞠 應 好</td> <td>金 康 植</td> <td>金 壽 漢</td> </tr> <tr> <td>金 昌 學</td> <td>全 潤 杓</td> <td>崔 丁 植</td> </tr> <tr> <td>金 亨 根</td> <td>李 基 烈</td> <td></td> </tr> </table> <p>○專門委員</p> <p>李 贊 穆</p>	李 敏 國	權 赫 柱	李 迎 春	鞠 應 好	金 康 植	金 壽 漢	金 昌 學	全 潤 杓	崔 丁 植	金 亨 根	李 基 烈	
李 敏 國	權 赫 柱	李 迎 春											
鞠 應 好	金 康 植	金 壽 漢											
金 昌 學	全 潤 杓	崔 丁 植											
金 亨 根	李 基 烈												